

#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G밸리 문화·복지센터 내 IoT 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

의안 번호	144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4월 3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“G밸리 문화·복지센터” 건물 (’21.2월 준공 예정) 內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이 운영하는 “IoT 기술지원센터” 유치를 위해 임대 공간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의거,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

- 소재지 :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-58번지 외 2필지
- 사용자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
- 허가면적 : (토지) 67.1  $m^2$ , (건물) 357.46  $m^2$
- 허가기간 : ’20.12.~ ’25.12.(5년)

### 나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에서 운영하는 “IoT 기술지원센터”는 IoT(사물인터넷) 제품 개발 과정에서 장비 지원, 무선 성능 검증, 품질개선 등의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임.

-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여 IoT 기술지원 센터를 지속적으로 G밸리 내에 유치함으로써, “G밸리 일대를 IoT 기반의 융·복합 산업거점으로 육성”하는 市 정책 사업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, 제13조제3항제14호
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## 라. 기 타

- 2020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'20.1.16.)
  - 심의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6조제2항제3호
  - 심의결과 : 적 정 ('20.1.23.)

※ 작성자 :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개발팀 최소영(☎2133-8464)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, 시행령 제13조, 제17조(사용료의 감면)
-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(연구기관의 지정)

**◆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(사용료의 감면)**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 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  2.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
  3.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
  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**◆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(사용료의 감면)**

-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6. 7. 12.>
  4.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

**◆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(사용·수익허가의 방법)**

-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12.4>
  14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,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(이하 “정부출연연구기관 등”이라 한다) 또는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

**◆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(특정연구기관)**

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·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(이하 “특정연구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**◆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(연구기관의 지정)**

법 제2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.
 

10.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